

4.3.30 성적평가특례규정

제정 2016. 11. 15.
개정 2017. 01. 19.
개정 2017. 06. 19.
개정 2019. 02. 27.
개정 2019. 12. 03.
개정 2022. 06. 09.
개정 2022. 10. 04.
개정 2022. 12. 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사내규 제27조(출석) 및 성적평가규정과 관련하여 성적평가방법 중 특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4학년 재학 중 조기취업자(상시근로 인턴 포함하되 아르바이트생은 제외), 창업자의 경우로 하며, 4학년 1학기 전에 조기취업자, 입학 이전 창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06.19., 2019.02.27., 2019.12.03., 2022.06.09., 2022.10.04.>

제3조 (성적평가방법) ① 조기취업자, 창업자의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학과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04.>

1. 인정학점 및 등급 : 학기당 최대 18학점 이내에서 학점 인정 가능하며, 최고 인정가능 등급은 A⁰로 한다.
2. 평가방식 : 정기고사, 과제물, 온라인 평가, 업체담당자 평가(별첨 서식 제2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위에 제시된 평가방식 중 과제물을 포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평가방식을 조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방식 당 배점비율은 최고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6.19>

② 삭제 <2019.02.27>

제4조 (평가절차) ① 조기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성적평가특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학과에 매학기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 중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 동일한 평가절차를 밟도록 한다. <개정 2017.06.19., 2019.12.03>

1.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학기초, 학기말 2회), 수료증명서(3학년), 당해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급여지급내역 <개정 2022.10.04.>
2.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수료증명서(3학년), 당해학기 등록금납입증명서, 월매출 증빙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 등), 사업계획서 <개정 2022.10.04.>

<전 호 신설 2019.12.03.>

② 소속학과에서는 학과회의에서 해당 서류를 심사하여 성적평가특례대상자를 선정 후 학과회의록 및 대상자명단, 성적평가특례신청서 및 전항의 관련서류(원본) 일체를 개강 후 2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기 개시 이후 기말고사 실시 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즉시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7., 2022.10.04.>

③ 성적평가특례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학기 성적은 별도의 성적평가계획에 의해 평가한다. <개정 2019.02.27>

④ 삭제 <2019.02.27>

⑤ 제출된 성적인정 관련 서류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확정한다. <신설 2017.01.19.>

제5조 (부정행위자처리) 제출서류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심사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성적이 부여된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은 'F' 처리 또는 재산정 처리하며, 부정행위자의 경우 학생상벌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 (성적평가특례취소) ① 취업중인 업체에서 퇴사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 잔여 수업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및 성적평가는 학교 복귀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기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통해 해당 취업사실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성적평가특례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성적에 대하여 취소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12.0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성적평가특례신청서

학 과		학년		학번			
성적평가특례 신청사유	취업(창업)현황						
	취업(창업)업체명	직위			취업(창업)일자		
이수학점 및 수강학점 현황							
구분	교필	기초	교선	전선	전필	기타	소계
이수학점							
수강학점							
합계							
<p>조기취업(창업)에 따른 성적평가특례신청 관련서류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별첨: 아래 취창업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취업사실 변동 확인용으로 학기말에 추가 제출하여야 함(업체 계속 근로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취업자(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료증명서(3학년), 당해학기 등록금납입증명서, 급여지급내역서) - 창업자(사업자등록증, 수료증명서(3학년), 당해학기 등록금납입증명서, 월매출 증빙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 등), 사업계획서)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 . .</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u>제출자:</u> (서명)</p> <p><u>학과장:</u> (서명)</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3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초당대학교총장귀하</p>							

업무수행 평가표

성명		소속부서				
현직위		주민등록번호	-			
평가기간	(최근 직전 6개월 단위로 평가)					
	20	~	20			
	항목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수행능력	실무관련지식					
	업무숙지능력					
	업무이행능력					
	창의성					
	발표력					
수행태도	성실성					
	책임감					
	안전관리준수					
출결태도	지각/결근/조퇴 등 출결상태 평가	* 무결근 : 20점 시 현재 ()점 * 업체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설정				
평가점수	_____ / 100점					
평가의견						

상기와 같이 귀 대학교 출신 직원에 대한 평가점수를 제출합니다.

20

평가자 직위 : _____ 평가자 성명 : _____ (인)

초당대학교총장귀하